

個人所得稅 稅率構造와 垂直的 衡平

盧 基 星

本稿는 垂直的 衡平에 관한 古典的 理論인 均等犧牲說을 援引하여 조세의 所得재분 배기능을 달성하는 데 가장 유용한 手段의 하나인 우리나라 종합소득세를 대상으로 하여 실제 세부담의 이론적 세부담에 대한 괴리의 정도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후 稅制改 編에 도움이 될 政策的 示唆點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實證分析結果, ① 名目稅率表보다 實效稅率表를 이용한 경우 50% 가까운 勤勞所得 者가 免稅惠澤을 받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다 잘 설명하고, ② 1975년에서 1991 년에 이르기까지 中間所得階層은 이론적 세부담보다 많이 부담하는 반면, 저소득계층 과 고소득계층은 보다 적게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나 稅負擔 乖離曲線은 逆U字型을 나 타내었고, ③ 5人家族基準으로 본 平均GNP에 해당하는 소득계층은 1975년에서 1980 年 기간에는 理論的 稅負擔보다 적게, 그리고 그 이후에는 많이 부담하였으며, ④ 稅 負擔의 理論的 稅負擔에 대한 괴리정도는 공제금액 또는 면세점이 높을수록 커지며, ⑤ 이는 대조적으로 근로소득세액 공제를 감안하였을 때, 稅負擔 乖離曲線이 低所得階 層과 高所得階層에서는 上向, 中間所得階層에서는 下向으로 이동하여 垂直的 衡平이 提 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垂直的 衡平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稅率體系調整과 아울러 所得控除, 所得 稅額控除制度의 개선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I. 序 論

租稅의 所得再分配 機能은 그것의 財源調達 機能 못지 않게 중요하다. 租稅의 所得再分配

機能은 기본적으로 세율구조나 체계를 통하여 고소득자가 저소득자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세 부담을 지게 함으로써 수행된다. 그러나 구체 적으로 高所得者가 低所得者에 비해 얼마나 많은 稅負擔을 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그 해답이 명확하지 않다. 이 문제는 租稅의 垂 直的 衡平和 직결되는 것으로서, 垂直的 衡平 을 만족하는 稅率體系가 존재한다면 그 체계 는 어떠한지 하는지, 그리고 稅率體系가 수직 적 형평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稅率體

筆者: 本院 研究委員

* 筆者는 本院의 金明淑, 柳一鎬 博士의 유익한 論評과 提案에 감사드리며, 또한 吳英秀 研究員 과 朴恩姬 研究助員의 電算處理 및 原稿整理, 그리고 財務部 稅制室의 자료협조에 깊은 감사 를 드린다.

系를 개정해야 하는지 등의 의문과도 통한다. 특히 이러한 문제는 所得再分配 機能이 가장 중요시되는 直接稅, 그 중에서도 個人所得稅의 稅率體系와 관련하여 제기될 수 있다.

本稿는 이러한 의문에 대한 하나의 해답을 구하기 위하여 垂直的 衡平에 관한 古典的 理論인 均等犧牲說을 원용하여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달성하는 데 가장 유용한 手段의 하나인 우리나라 종합소득세를 대상으로 하여 실증적 분석을 해 본다¹⁾. 그리고 그 분석결과를 통해 향후 稅制改編에 도움이 될 政策的 示唆點을 도출해 본다.

最近 Young(1990)은 所得稅率體系와 古典的인 均等犧牲說과의 부합 여부를 美國을 포함한 先進 4個 國家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이 理論이 現實의 소득세율체계에 잘 반영되었다는 것을 보였다. 그는 實效稅率資料와,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 名目稅率, 즉 과세표준에 대한 平均稅率資料를 이용하여 미국의 경우²⁾ 저소득계층에게는 稅收確保를 위해(저소득계층에 相對的으로 많은 인원이 분포되어 있으므로) 稅負擔이 均等犧牲說이 시사하는 理論的 稅負擔보다 많이 부과되고, 고소득계층에게는 效率性 提高를 위해 적게 부과되었다는 것을 보였다. 반면에 중간 소득계층에게

는 이론적 세부담과 거의 일치하는 垂直的 衡平을 충실히 반영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의 요체가 效用函數 推定에 있다고 할 때, 소득자료로서 實際所得과, 課稅標準을 이용하는 경우 그 파라미터의 추정치가 分析對象國家에 따라 상이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本稿에서는 우리나라 綜合所得稅의 名目稅率表와, 實際稅負擔資料에 가깝다고 판단되는 實效稅率表를 각각 이용한다.

實證分析結果, ① 名目稅率表보다 實效稅率表를 이용한 경우, 50% 가까운 勤勞所得者가 免稅惠澤을 받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다 잘 설명하고, ② 1975년에서 1991년에 이르기까지 中間所得階層은 이론적 세부담보다 많이 부담하고, 저소득계층과 고소득계층은 보다 적게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나 稅負擔 乖離曲線은 逆U字型을 나타내었고, ③ 5人家族基準으로 본 平均GNP에 해당하는 소득계층은 1975년에서 1980년 기간에는 理論的 稅負擔보다 적게, 그리고 그 이후에는 많이 부담하였으며, ④ 稅負擔의 理論的 稅負擔에 대한 괴리 정도는 공제금액 또는 면세점이 높을수록 커지며, ⑤ 이는 대조적으로 근로소득세액 공제를 감안하였을 때, 稅負擔 乖離曲線이 低所得階層과 高所得階層에서는 上向, 中間所得階層에서는 下向으로 이동하여 垂直的 衡平이 提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991년의 경우, 5人家族基準으로 근로소득공제 및 인적공제만 고려할 때, 월소득이 약 92萬원인 소득자의 세부담은 이론적 세부담에 비해 10% 미달하였다. 월소득이 157萬원인 소득자의 경우 세부담은 理論的 稅負擔에 비해 23%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그 괴

1) 現行 綜合所得稅率體系는 여타 소득이 없을 경우 근로소득세율체계와 같음. 따라서 1975년 종합소득세율체계 도입 前後의 연결을 위해, 그 이전은 근로소득세율체계를 이용함.

2) 名目稅率資料는 法定所得稅率表로부터 쉽게 계산될 수 있으므로 자료획득 비용이 적게 든다는 장점을 가진다. 그러나 Young이 실제로 사용한 실효세율표는 總所得이 아니라 必要經費인 이소비 등을 控除한 후의 소득인(단, 인적공제와 기부금공제는 제외) 調整所得(AGI)에 대한 稅率表인.

리폭이 가장 컸다. 그리고 月所得이 590萬원인 소득자의 경우에는 세부담이 이론적 세부담에 비해 19%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I章에서는 垂直的 衡平의 概念과 均等犧牲說의 理論的 模型을 제시한다. III章에서는 이 模型을 근거로 하여 理論的 稅負擔을 推定하고, 종합소득세율표에 의해 산출된 稅負擔을 이와 비교하여 그 乖離率을 분석한다. IV章에서는 요약 및 本 研究의 限界, 그리고 稅制改

編을 위한 政策的 示唆點을 제시하면서 結論을 맺는다.

II. 垂直的 衡平과 均等犧牲說

1. 垂直的 衡平

垂直的 衡平이란 稅制改編이나 課稅原理를 논할 때 가장 빈번히 인용되는 개념 중 하나이다. 수직적 형평과 대칭되는 개념으로 역시 자주 인용되는 것이 水平的 衡平인데, 사실이 두가지 개념은 銅錢의 앞면과 뒷면의 관계를 가진다. 水平的 衡平은 “같은 여건에 있는 사람은 똑같이 취급해야(課稅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는 다른 여건에 있는 사람을 다르게 취급해야 한다는 水直的 衡平을 동시에 함축한다. 따라서 水平的 衡平의 개념을 정확하게 음미하여 보면 자연스럽게 垂直的 衡平의 개념도 확실해진다.

水平的 衡平은 엄밀한 의미에서 人的·物的 資源의 賦存이 개인별로 같고, 동시에 效用函數가 同一할 때, 똑같이 과세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이 중 어느 하나가 다르다면 같이 취급할 수 없다. 효용함수는 같으나 부존자원이 다를 경우 달리 취급해야 하는 것은 自明하다. 效用函數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人的·物的 資源의 賦存이 같다고 해서 똑같이 과세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수직적 형평을 저해하므로 역시 달리 취급해야 한다³⁾.

그러나 현실적으로 效用函數의 形態를 알 수 없으므로 획득가능한 情報, 즉 所得과 消費의 規模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가능한 한 각 個人이 처한 여건의 相異與否를

3) Feldstein(1975)의 예를 인용하여, 각 개인의 效用函數는 각각

$$U_1 = C_1^2 L_1$$

$$U_2 = C_2 L_2^2$$

1, 2는 각 개인을 나타내는 첨자

와 같다고 하자. 단 U 는 效用, C 는 財貨消費, L 은 餘暇라 하고, 같은 賃金率과 量과 質의 面에서 같은 勞動이 주어져 있다고 하자. 이때 근로소득세나 소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면 각 개인은 각각 다른 재화와 여가소비의 조합을 선택하여도 같은 效用水準을 얻게 된다. 임금률을 1, 부존노동량을 1이라 가정하여, 각 개인의 效用極大條件을 구해 보면

$$C_1 = \frac{2}{3}, L_1 = \frac{1}{3}$$

$$C_2 = \frac{1}{3}, L_2 = \frac{2}{3}$$

가 되어 效用水準은 각 개인 모두 4/27로서 같다. 여기에 水平的 衡平을 달성하기 위해 같은 세율 t 의 세금을 부과한다면 稅後 效用은 각각

$$U_1' = (1-t)^2 \frac{4}{27}$$

$$U_2' = (1-t) \frac{4}{27}$$

가 되어, 개인 1이 2보다 낮은 效用을 가지게 된다. 이때 개인 1은 2보다 여가를 즐기거나 일을 열심히 하여 소득을 상대적으로 많이 획득하여 소비를 즐기는 消費選好型이므로, 상대적으로 세부담을 많이 하게 된다. 따라서, 稅前 같은 效用을 얻은 경우 稅後에도 역시 같은 效用을 얻어야 한다는 水平的 衡平의 原理를 부수적으로 도출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유사하게 金融資本의 부존이 같을 때 未來消費選好型(貯蓄型)과 現在消費選好型(消費型) 사이에서도 위에서와 같은 논의를 전개할 수 있다.

판별하여 所得과 처한 要件이 같을 경우 같은 稅率로 과세하는 것이 水平的 衡平을 만족시키는 것이다. 예컨대 같은 금액의 소득을 얻는 사람이라도, 기혼/미혼 여부와 부양가족의 숫자가 다름에 따라서 稅負擔이 달라지는 것도 이러한 연유에서이다. 그러므로 水平的 衡平 나아가서 垂直的 衡平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稅制가 어느 정도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고 하겠다. 물론 稅制가 복잡해지면 과다한 稅務行政 費用이 초래되고, 脫稅나 避稅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러한 이유만으로 稅制의 單純化가 지나치게 강조되어서는 안된다. 따라서 세계의 단순화에 따른 두가지 相衡되는 效果를 잘 비교하여 적절한 수준의 稅制單純化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면, 다음 의문은 垂直的 衡平을 稅制上 어떻게 반영하느냐이다. 이는 다시 效用函數와 여타 여건은 같고, 賦存資源이 다른 여러 사람들을 어떻게 달리 課稅하느냐 하는 문제로 연결된다. 즉 稅率體系의 垂直的 衡平 問題는 어떠한 累進構造가 바람직한가라는 의문으로 자연스럽게 귀결된다⁴⁾. 累進的 構造 자체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으나, 그 구체

적인 累進的 稅率體系에 대해서는 각자의 價値判斷에 의존하므로,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것은 없다. 理論的으로는 J. S. Mill이 제안한 均等課稅는 均等 희생을 뜻한다는 均等犧牲說이 하나의 基準은 된다고 하겠다⁵⁾.

2. 均等犧牲說

J. S. Mill이 처음으로 주장한 均等犧牲說은 絕對均等犧牲說이라고도 불리는데⁶⁾

$$U(Y_i) - U(Y_i - T_i) = S \dots\dots\dots(1)$$

(이하 하첨자 i 는 편의상 생략함)

와 같이 표현된다. U 는 效用函數, Y 는 所得, T 는 稅負擔, S 는 稅前·後 效用의 差異, 즉 희생의 정도를, 그리고 i 는 각 개인을 나타낸다. 따라서 (1)式은 效用으로 표시한 모든 個人的 희생 정도가 같도록 T 가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1)式을 T 에 대해 풀면

$$T = Y - U^{-1}(U - S) \dots\dots\dots(2)$$

으로 변형되어 T 와 Y 와의 관계식을 도출할 수 있다. 여기서 效用函數가 각 개인에 따라 상이하다면 稅負擔을 所得水準에만 연결시키기 어렵다. 따라서 효용함수가 모두에게 같다고 가정하여 이 문제를 피한다.

絕對均等犧牲說은 稅後所得의 稅前所得에 대한 비율이 균등해야 한다는 比例均等犧牲說로 발전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는 효용함수를 단조변형시키면 도출되므로 絕對均等犧牲의 개념과 다름없다. 즉 효용함수 $U(Y)$ 를 로그변형시켜 絕對犧牲이 각 個人에게 같게 하면

4) 比例稅와 逆進稅下에서도 고소득층의 稅負擔이 절대액 기준으로 많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누진세의 선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그러나 현실적으로 소득세에 관한 한 累進稅 자체에는 異論이 없는 것이 사실임.
5) Hochman and Rodgers(1969)는 個人間 소비의 外部經濟가 있다고 가정하고 모형을 설정, 자발적인 고소득자의 저소득자로의 所得移轉이 가능함을 보임. 그리고 이를 근거로 累進的 所得稅制構造를 세울 수 있음.
6) Young이 인용한 J.S. Mill을 그대로 재인용하면, "... equality of taxation, therefore, as a maxim of politics, means equality of sacrifice ...". 均等犧牲說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Musgrave(1959), pp.95~101 참조.

$$\log(U(Y)) - \log(U(Y-T)) = S$$

$$\log(U(Y)/U(Y-T)) = S'$$

가 되고, 指數型으로 變形시키면

$$U(Y)/U(Y-T) = e^{S'} \dots\dots\dots(3)$$

이 되므로 (1)式의 絶對犧牲(S)에서 比例犧牲($e^{S'}$)을 나타내는 식으로 變形될 수 있다. 단지 차이는 稅負擔을 나타내는 式이 (2)에서와는 달라진다. 즉 稅負擔을 T' 라 하면 $T' = Y - U^{-1} \cdot (U(Y) \cdot e^{-S'})$

均等犧牲說을 조세체계 내에서의 受容與否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效用函數의 推定이 필수적이다. 여기서는 Young(1990)이 이용한 단순한 형태의 效用函數를 설정한다.

$$U(Y) = -AY^{1-c} + B \dots\dots\dots(4)$$

$$A > 0, C > 1,$$

C 는 바로 比例危險回避係數를 나타내며 소득수준이 변동하여도 불변이다⁷⁾. 이때 주된 추정대상 파라미터가 바로 C 이다.

(1)式의 양변을 T 로 나누면

$$\frac{U(Y) - U(Y-T)}{T} = \frac{S}{T} \dots\dots\dots(5)$$

가 성립한다. 그리고 $T = \Delta Y$ 이고 $\{U(Y) - U(Y-T)\} = \Delta U$ 이므로 (5)式의 좌변은

$$\frac{U(Y) - U(Y-T)}{T} = \frac{\Delta U}{\Delta Y}$$

가 되어 限界效用을 뜻한다. 따라서 $\frac{\Delta U}{\Delta Y} = \frac{S}{T}$ 이고 한계효용이 均等犧牲을 稅負擔으로 나눈 것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연속적인

개념으로 표시하면 Y 와 $(Y-T)$ 사이의 어느 값(W)에서의 微分으로 볼 수 있으므로,

$$U'(W) = \frac{S}{T} \dots\dots\dots(6)$$

로 다시 표시할 수 있다. 분석의 편의를 위하여 W 를 Y 와 $(Y-T)$ 의 기하평균으로 하면

$$U'(\sqrt{Y(Y-T)}) = \frac{1}{T} \dots\dots\dots(7)$$

로 표시할 수 있고, 양변에 로그를 취하면

$$\ln U'(\sqrt{Y(Y-T)}) = -\ln T \dots\dots\dots(8)$$

그런데 (4)式으로부터 $C = -Y \cdot \{U''(Y)/U'(Y)\}$ 또는 $\frac{d(-\ln U'(Y))}{d(\ln Y)}$ 이므로 C 의 추정치는 바로 $-\ln U'$ 을 $\ln Y$ 에 선형으로 회귀시켜 구할 수 있다. 즉, (8)式에서 $-\ln U'$ 은 $\ln T$ 와 같으므로 $\ln T$ 를 한계효용계산에 이용한 기준소득의 로그값, 즉 $\ln(\sqrt{Y(Y-T)})$ 에 회귀시키면 된다.

C 의 추정치가 구해지면, 역으로 소득과 稅負擔 統計資料를 效用함수 (1)式에 대입하여 각 소득계급의 희생된 효용을 계산하고, 희생된 효용을 산술평균하여 均等犧牲을 다시 계산한다. 마지막으로 계산된 均등희생을 (2)式에 대입하여 각 所得階層別 理論的 稅負擔을 계산해 낸다.

III. 個人所得稅 稅率構造와 垂直的 衡平: 實證分析

1. 統計資料

效用函數의 推定은 稅前所得과 稅負擔資料

7) Young(1990)과 Friend and Blume(1975) 참조.

만 있으면 가능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과 課稅標準으로 각각 구분된 자료 및 실제 세부담자료를 구하기 어려웠고, 가능하더라도 각 소득자의 여건이 다를 것이므로 綜合所得稅의 名目(法定)稅率表를 이용한다. 그리고 공제제도가 미국과 같이 복잡하지 않아 면세점이라 불리는 免稅所得金額을 알 수 있으므로, 이를 名目稅率表의 과세표준에 합산한 總所得과 이에 대한 算出稅負擔資料를 구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課稅標準과 算出稅負擔을 이용하는 방법과 과세표준에 면세소득금액을 합한 總所得과 算出稅負擔을 이용하는 방법(實效稅率表) 등 두가지를 모두 시도해 본다⁸⁾.

여기서 實際統計를 이용하지 않는 데 따르는 자의적인 統計의 選擇, 복잡다양한 控除制度의 미흡한 반영 등의 문제점이 제기될 수도 있다. 그러나 오히려 實驗室에서 실험하듯이 5人家族, 無控除(의료비, 보험료 등) 등으로 여건을 같게 하여 소득만이 차이가 있을 때, 稅負擔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분석할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다 할 수 있다. 實際所得分布와 이에 따른 稅負擔의 자료만으로는 소득은 같으나 여건이 상이하야 相互比較가 어렵게 되

는 문제도 있다. 즉 통계상 100萬원에서 150萬원 사이의 所得者數가 100名이고 實際稅負擔이 1千萬원으로 나타났다면 이 계급의 平均所得이 125萬원, 1人當 稅負擔이 10萬원으로 하나의 표본이 구성된다. 그러나 100名の 소득자 가운데 扶養家族, 控除額 그리고 所得構成의 差異 등 여건의 상이함으로 말미암아 선택된 표본의 代表性이 의심스럽게 된다⁹⁾.

먼저 名目綜合所得稅率 體系는 <附表 1>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1970, 1972, 1975, 1977, 1978, 1980, 1982, 1983, 1989, 1991년에 변동되었다¹⁰⁾. 1970년, 1972년에는 所得階級이 9개, 그리고 1989년에는 8개로서 한 계급에서 하나의 표본을 추출할 경우 標本數가 적기 때문에 한 계급으로부터 1/3과 2/3 지점에서 2개의 표본을 추출하였다. 단, 최저계급과 최고계급에서는 각각 1개의 표본을 추출하였다. 1975년에서 1983년은 所得階級數 자체가 16~17개였으므로 한 계급에서 1개의 표본을 추출하였고, 1991년의 경우에는 綜合所得稅率 體系의 경우에는 소득계급당 4개의 표본을 추출하였다. 이때 최저계급과 최고계급에서는 각각 1개의 標本을 추출하였다.

다음으로 名目稅率表를 이용하는 경우 所得統計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추출된 표본의 課稅標準과 이에 상응하는 算出稅額 統計를 이용하였고, 다음으로 實效稅率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각 年度의 免稅所得金額을 각각의 추출된 표본의 課稅標準에다 합하여 이용하였다. 免稅點은 勤勞所得稅의 경우 기본적으로 5人家族을 基準으로 하였다. 그리고, 사업소득세는 근로소득세와 免稅點을 달리하고 독신가구, 4人家族 면세점도 家族數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를 고려하여 최근 1991년의

8) 美國의 경우 標準控除와 허용된 項目別 控除 중 선택하는 제도가 운용되므로, 명목소득세율표로부터 계산된 총소득과 산출세부담은 실제소득과 세부담에 비해서 誤差가 클 것으로 사료됨.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의 標準控除制와 유사한 人的·勤勞所得控除가 있고, 醫療費, 保險料, 教育費 控除가 있으나 낮은 금액의 상한선이 존재하므로, 명목세율표로부터 계산된 총소득과 산출세부담이 실제의 소득과 세부담에 비해서 오차가 상대적으로 적으리라 생각된다.

9) 100名 모두를 별개의 標本으로 선택할 경우에도 역시 與件의 상이함이 문제가 됨.

10) 1974년 이전은 勤勞所得稅率體系임.

사업소득세와 근로소득세 부담을 독신가구 및 4人家族 基準으로 하여 각각 분석해 본다. 算出稅額은 명목세율표 또는 실효세율표 어느 것을 이용하더라도 변동이 없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附表 1>에서 1970년의 예를 들어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첫째, 소득계급의 중간 과세표준은 60萬원이고, 이 해의 면세소득 금액은 5人家族 基準 12萬원이므로 명목세율은 (C/A)에 나타난 7%인 반면, 실효세율은 (C/B)에 나타난 2.3%가 된다. 따라서 效用函數 推定에 이용된 자료는 名目稅率의 경우 A와 C列에 나타난 통계이고, 實效稅率의 경우에는 B와 C列에 나타난 통계이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소득번호가 표본의 소득에 따른 편의상 순서를 나타내는 것이지만 各年度間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所得分布上의 개략적인 感은 가질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그리고 근로소득세의 경우 勤勞所得稅額控除制度가 시행되고 있으므로 이의 稅負擔效果를 1991년을 대상으로 살펴본다.

2. 推定結果

效用函數의 파라미터 C의 推定値는 <表 1>, <表 2>에서와 같이 名目稅率表를 이용하였을 때 1.4~1.7 사이의 수치를 나타냈고,

11) 效用함수 파라미터 推定値가 2보다 큰 것은 資産포트폴리오構成 자료를 토대로 效用함수 추정을 시도한 Friend and Blume(1975)의 結果에 부합하고 있다. Friend and Blume을 그대로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富의 水準과 관계없이, 비례위험회피계수는 평균적으로 1보다는 크고 2보다 클 수 있다...”

實效稅率表를 이용하였을 때는 1.9~2.5 사이의 수치를 나타냈다¹¹⁾. 名目稅率表를 이용한 경우 추정치가 美國의 경우와 거의 같은 수치를 나타냈으나 實效稅率表를 이용한 경우에는 美國의 경우보다 대략 0.5~0.8 정도 큰 값을 나타냈다(附表 2 참조). 물론 C의 推定値의 t-값은 통계적으로 有意하였고, 그 推定式의 說明力도 높아 R^2 가 거의 모두 0.98 이상이었다.

C가 추정되면 각 과세표준과 총소득에서의 稅負擔에 의한 效用의 減少分, 즉 犧牲을 (1)식에 의해 계산할 수 있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소득의 크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므로, 평균을 구하여 그 평균값, \bar{S} 를 均等犧牲으로 보아도 무리는 없을 것이다. \bar{S} 의 크기는 최근에 가까워질수록 점점 작아지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C의 推定値는 큰 변동이 없으나 경상소득은 계속 증대되어 왔기 때문에 같은 세액에 대한 犧牲의 정도가 작아진 데 기인하는 것이다. \bar{S} 를 (2)식에 대입하여 均等犧牲說에 의한 각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理論的稅負擔을 구할 수 있다.

(2)식은 일반식이므로, $A=1$ 로 놓고 (4)식을 (2)식에 대입하여 풀면

$$T = Y - (Y^{1-c} + \bar{S})^{1-c} \dots\dots\dots (9)$$

로 변형되고, Y는 C와 \bar{S} 에 해당되는 課稅標準 또는 總所得이다. 각 경우 C의 推定値 및 S의 平均을 대입하여 계산하면 理論的稅負擔을 쉽게 구할 수 있다. 추정된 소득수준별 理論的稅負擔은 均等犧牲說의 관점에서 垂直的 衡平을 만족하므로, 이를 기준으로 하여 실제 세부담이 얼마나 괴리되어 있는지를 분석할 수 있다.

〈表 1〉 綜合所得稅負擔의 理論的 稅負擔과의 乖離 (I)
 - 名目稅率表를 이용한 경우 -

소득번호	1970	1972	1975	1977	1978	1980	1982	1983	1989	1991
1	0.47(1)	0.43(1)	0.50	0.58	0.62	0.54	0.62	0.48	0.38(1)	0.10(1)
2	0.01(2)	0.00(2)	-0.02	-0.01	0.01	-0.05	0.00	-0.04	-0.06(2)	-0.10(2)
3	-0.05(2)	-0.05(2)	-0.14	-0.14	-0.13	-0.13	-0.12	-0.10	-0.08(2)	-0.04(2)
4	-0.11(3)	-0.10(3)	-0.17	-0.18	-0.17	-0.16	-0.17	-0.13	-0.21(3)	-0.04(2)
5	-0.13(3)	-0.13(3)	-0.17	-0.19	-0.17	-0.16	-0.18	-0.13	-0.17(3)	-0.05(2)
6	-0.15(4)	-0.15(4)	-0.15	-0.17	-0.16	-0.13	-0.17	-0.12	-0.04(4)	0.04(3)
7	-0.17(4)	-0.15(4)	-0.12	-0.14	-0.14	-0.10	-0.14	-0.10	-0.03(4)	0.05(3)
8	-0.17(5)	-0.15(5)	-0.06	-0.10	-0.12	-0.06	-0.09	-0.07	-0.02(5)	0.04(3)
9	-0.16(5)	-0.14(5)	-0.03	-0.04	-0.09	-0.03	-0.04	-0.05	-0.01(5)	0.02(3)
10	-0.12(6)	-0.11(6)	0.08	0.04	-0.03	0.01	-0.02	-0.03	0.01(6)	0.01(4)
11	-0.09(6)	-0.09(6)	0.11	0.08	0.01	0.03	0.00	-0.01	0.01(6)	0.01(4)
12	0.00(7)	-0.00(7)	0.11	0.10	0.05	0.06	0.02	0.02	0.08(7)	-0.00(4)
13	0.05(7)	0.04(7)	0.06	0.08	0.08	0.06	0.03	0.05	0.07(7)	-0.02(4)
14	0.12(8)	0.11(8)	0.01	0.03	0.08	0.05	0.04	0.06	0.04(8)	-0.02(5)
15	0.15(8)	0.14(8)	-0.02	0.00	0.05	0.03	0.04	0.07	-	-
16	0.27(9)	0.27(9)	-0.03	-0.01	0.02	0.01	0.05	0.07	-	-
17	-	-	-	-	0.01	-0.01	0.06	-	-	-
\bar{C}	1.47	1.45	1.52	1.62	1.53	1.62	1.58	1.59	1.64	1.67
\bar{S}	1.28	1.64	0.89	0.45	0.36	0.06	0.09	0.08	0.03	0.02

* () 안의 수치는 각 소득번호가 속하는 세율표상의 소득계급을 나타냄.
 註: \bar{S} 는 10^{-4} 을 곱하여야 함.

1970, 72년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세율체계를 이용한 것임.

〈附表 1〉에는 각 年度別 所得 또는 課稅標準別 理論的 稅負擔, 算出稅負擔 그리고 이의 乖離率이 나타나 있다. 〈表 1〉, 〈表 2〉는 이 두가지 乖離率을 요약·정리한 것이다.

가. 名目稅率表를 이용한 경우

먼저, 名目稅率表를 이용한 경우 稅負擔의 乖離率 推移를 〈表 1〉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70년에는 가장 낮은 所得階級 (1)과 가장 높은 所得階級 (8), (9)가 이론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稅負擔보다 47%, 12~27% 정도를 超過負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3), (4), (5), (6) 소득계급은 10~17% 적게 稅負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稅負擔構造가 1972년까지 큰 변동없이 지속되었다. 특히 超過負擔은 소득이 많아질수록 커졌고, 중간계급에서 稅負擔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1974년 이전의 세율체계는 勤勞 所得稅率 體系이므로 1975년 이후의 綜合所得稅率 體系와는 근로소득만을 고려할 때는 一貫性이 있게 된다.

1975년에서 1988년까지는 1970~72년의 소득계급이 9개인 데 반해 소득계급이 대폭 늘어나 16~17개였다. 이 기간동안의 특징은 첫

〈表 2〉 綜合所得稅負擔의 理論的 稅負擔과의 乖離(勤勞所得稅, 5人家族基準)(II)
 - 實效稅率表를 이용한 경우 -

소득번호	1970	1972	1975	1977	1978	1980	1982	1983	1989	1991
1	-0.12(1)	-0.24(1)	-0.69	-0.67	-0.60	-0.49	-0.45	-0.34	-0.42(1)	-0.46(1)
2	0.07(2)	0.04(2)	-0.36	-0.33	-0.26	-0.24	-0.18	-0.13	-0.10(2)	-0.10(2)
3	0.08(2)	0.07(2)	-0.19	-0.16	-0.11	-0.14	-0.10	-0.03	-0.01(2)	0.04(2)
4	0.07(3)	0.13(3)	-0.07	-0.05	-0.03	-0.07	-0.03	0.04	-0.05(3)	0.09(2)
5	0.05(3)	0.11(3)	0.02	0.03	0.04	0.00	0.04	0.09	0.02(3)	0.11(2)
6	0.03(4)	0.06(4)	0.10	0.09	0.09	0.09	0.10	0.13	0.20(4)	0.23(3)
7	-0.02(4)	0.03(4)	0.18	0.16	0.13	0.15	0.17	0.14	0.20(4)	0.22(3)
8	-0.07(5)	-0.01(5)	0.28	0.24	0.16	0.21	0.24	0.14	0.18(5)	0.17(3)
9	-0.07(5)	-0.02(5)	0.35	0.30	0.20	0.24	0.25	0.12	0.15(5)	0.13(3)
10	-0.06(6)	-0.03(6)	0.41	0.35	0.24	0.25	0.21	0.10	0.11(6)	0.02(4)
11	-0.05(6)	-0.03(6)	0.33	0.31	0.24	0.23	0.15	0.07	0.08(6)	-0.02(4)
12	-0.00(7)	-0.01(7)	0.20	0.22	0.21	0.18	0.08	0.04	0.01(7)	-0.07(4)
13	0.01(7)	-0.01(7)	0.01	0.04	0.15	0.10	0.02	-0.01	-0.08(7)	-0.12(4)
14	0.02(8)	-0.02(8)	-0.12	-0.10	0.04	0.01	-0.03	-0.05	-0.22(8)	-0.19(5)
15	0.02(8)	-0.02(8)	-0.17	-0.16	-0.07	-0.08	-0.09	-0.10	-	-
16	0.03(9)	-0.04(9)	-0.19	-0.19	-0.14	-0.15	-0.13	-0.14	-	-
17	-	-	-	-	-0.17	-0.19	-0.16	-	-	-
\bar{C}	1.95	2.11	2.01	2.16	1.90	2.29	2.29	2.21	2.53	2.50
\bar{S}	2.54	0.27	0.32	0.02	0.065	0.001	0.001	0.003	0.0001	0.0002

* () 안의 수치는 각 소득번호가 속하는 세율표상의 소득계급을 나타냄.
 註: \bar{S} 는 10^{-7} 을 곱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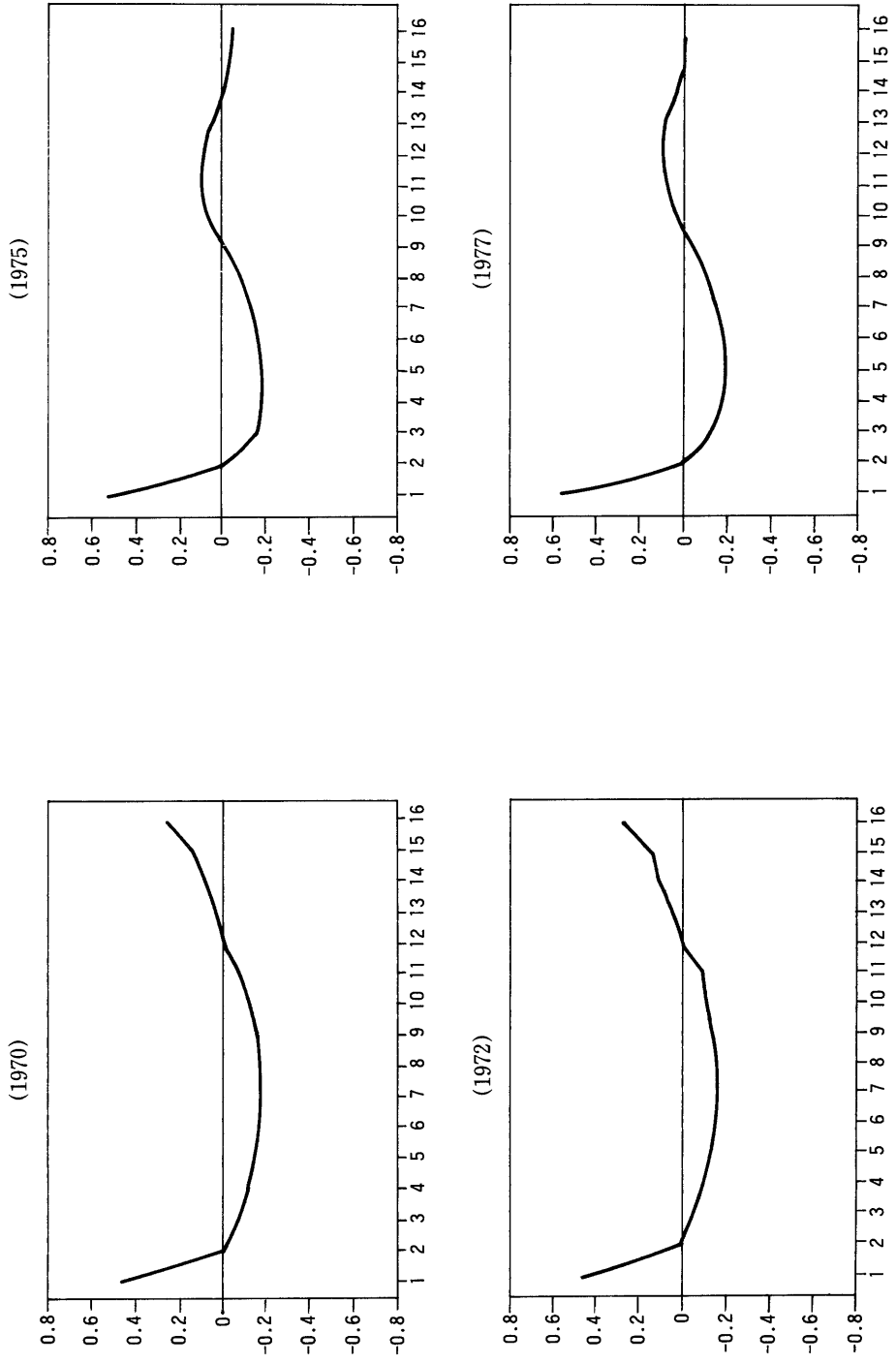
째, 가장 낮은 소득계급 (1)은 이전보다 다소 무거운 稅負擔을 한(48~62% 초과하여 부담) 것으로 나타났고, 둘째 가장 높은 소득계급 (13~17)의 超過負擔은 이전기간보다 훨씬 낮아졌다. 1975년, 1977년에는 최고소득계급의 세부담이 이론적 세부담보다 오히려 적게 되었다. 그러나 중간계급의 過少負擔의 정도는 이전기간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거나, 절대 퍼센티지 수준에서는 작아졌다. 그러나 전체적인 乖離 정도는 점점 작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1989년과 1991년에는 가장 낮은 소득계급에서 稅負擔은 이론적 세부담보다 각각 38%, 10% 많았지만 초과부담의 정도는 그 이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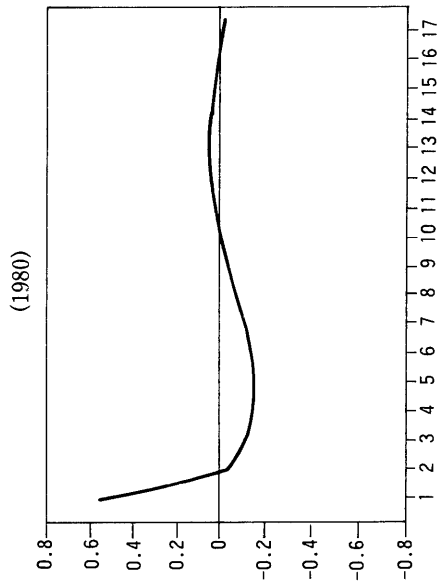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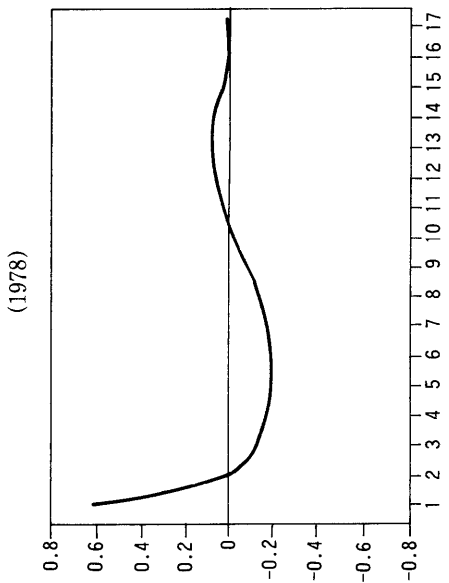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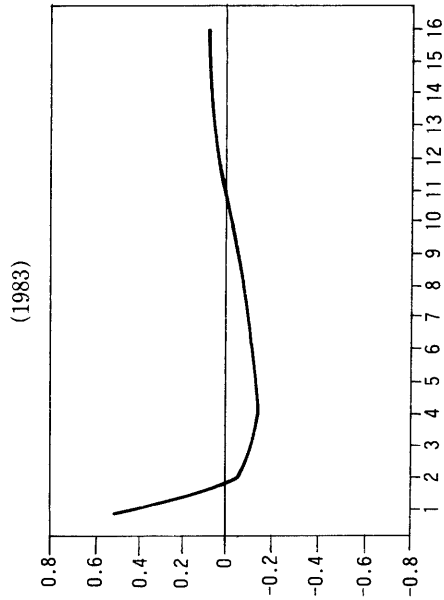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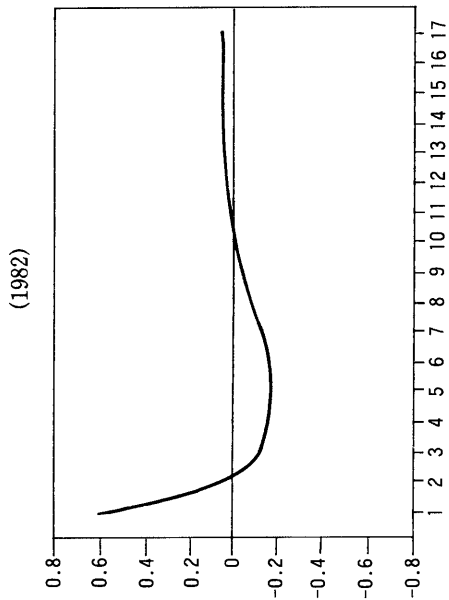
보다 줄어든 것이다. 따라서 名目稅率表를 이용한 경우 최근의 綜合所得稅率 體系가 균등 회생설이 시사하는 垂直的 衡平에 그런대로 잘 부합하고 있다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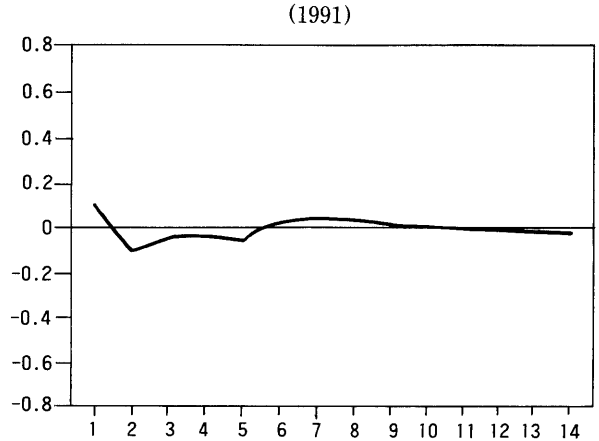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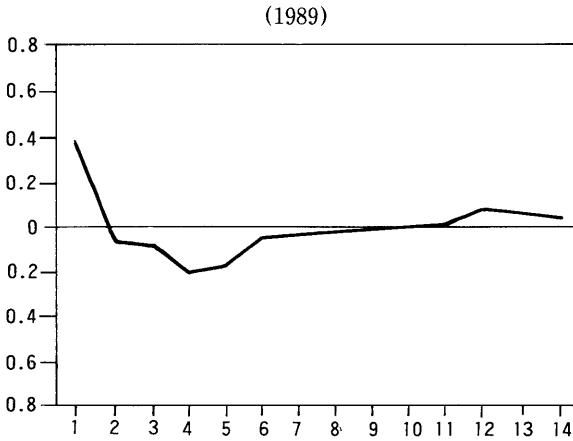
乖離率이 5%를 초과하는 소득계급수는 1970년의 경우 12개였으나 1983년에는 10개로 점점 작아졌고, 10%를 초과하는 所得階級數는 1970년의 11개에서 1983년에는 4개에 지나지 않았다. 그리고 1991년에는 乖離率이 10%를 초과하는 所得階級은 없었다.

年度別, 所得水準別 乖離率의 推移를 [圖 1]에서 살펴보면 1970년과 1972년은 算出稅負擔의 이론적 세부담에 대한 乖離 程度가 양극

[圖 1] 綜合所得稅負擔과 理論的 稅負擔의 乖離 (I)
 - 名目稅率表를 이용한 경우 -







註: 횡축은 소득번호 또는 소득계급을, 종축은 비율을 나타냄.

단에서 (+)로서 컸고, 중간에서는 (-)를 나타내는 U字型 曲線을 나타냈다¹²⁾. 그러나 1975년 이후는 최고소득계급의 稅負擔이 점점 이론적 세부담에 접근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1991년에는 전반적인 所得階級에서 이론적 세부담에서 크게 괴리되지 않는 현상을 보여주었다. 특히 팔목할 만한 것은 최저소득계급의 실제 세부담이 이론적 세부담을 크게 상회했던 1970년 초기에서 점차 그 괴리의 정도가 약해 1991년에는 큰 차이가 없어졌다는 점이다. 그리고 曲線의 最低點이 1970~72년에서의 7~8소득번호에서부터 그 이후에는 낮은 소득번호로 이동했다는 점이다.

나. 實效稅率表를 이용한 경우

다음으로 實效稅率表를 이용한 경우 <表 2>에 나타난 算出稅負擔의 理論的 稅負擔과의 乖離率을 살펴보면 제일 먼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소득번호 (1)에서의 乖離率이 (-)라는 점이다. 1970년과 1972년은 약 12~24%의 과소부담을 한 것으로 나타났고, 1975년에는 갑자기 60%臺의 과소부담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다가 1980년대에는 40% 수준으로 낮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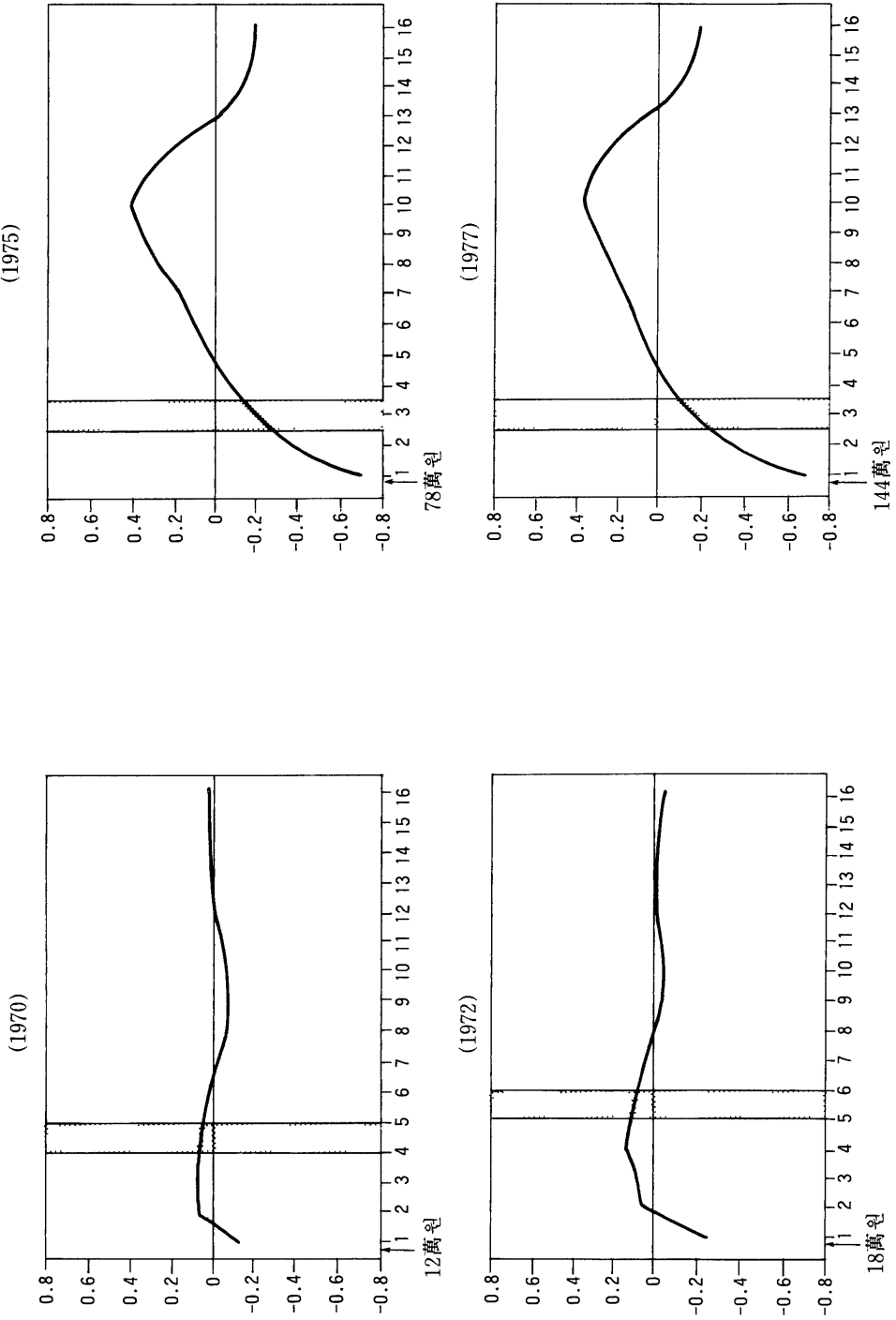
그리고 또 다른 특이한 현상은 1970~72년에는 算出稅負擔이 理論的 稅負擔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는 데 반하여, 그 이후에는 소득번호수의 半 이상이 절대값에서 10%를 상회하여 1975년에는 16개 중 12개, 1978년에는 17개 중 12개가, 80년대에는 6~11개가 1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所得水準別 乖離率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名目稅率表를 이용한 경우와는 달리 [圖 2]에서와 같이 1975년 이후에는 逆U字型을 나타낸다는 점이다. 이는 최저소득계층과 최고소득계층이 상대적으로 過少負擔을 하고, 중간계층은 過重負擔을 했다는 것을 뜻한다.

名目稅率表를 이용한 경우에는 명확하게 소득계층을 구분하기가 어려웠으나, 이 경우에는 1人當GNP를 고려함으로써 개인별 소득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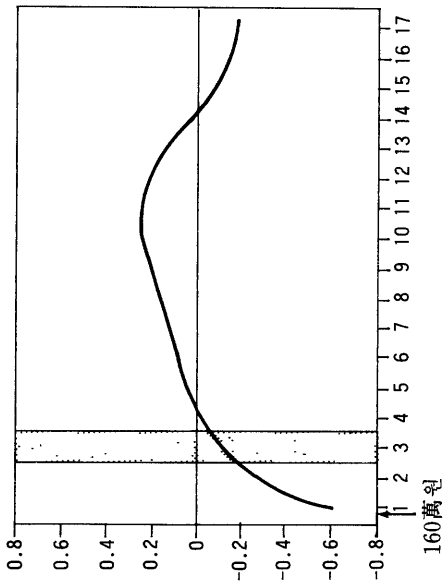
12) 이와 같은 U字型 乖離率曲線은 美國(1957, 1987년), 日本(1987년), 英國(1987년) 등의 국가에서도 나타났음. 특히 英國과 日本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것과 대단히 유사하였음. Young (1990)의 그림을 참조.

[圖 2] 綜合所得稅負擔과 理論的 稅負擔의 乖離(勤勞所得稅, 5人家族基準)(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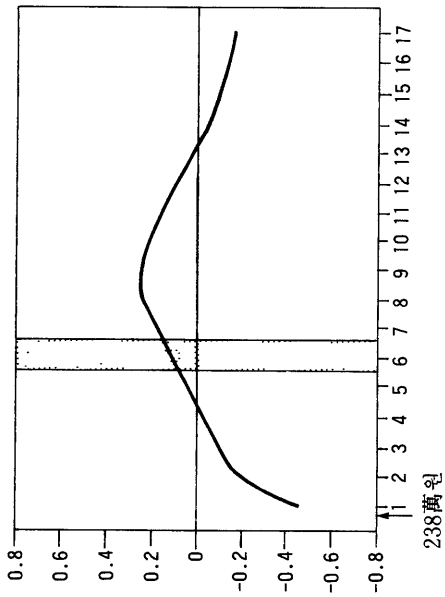
— 實效稅率表를 이용한 경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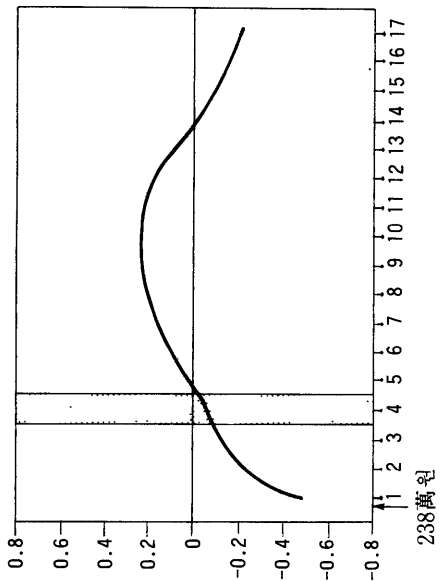
(19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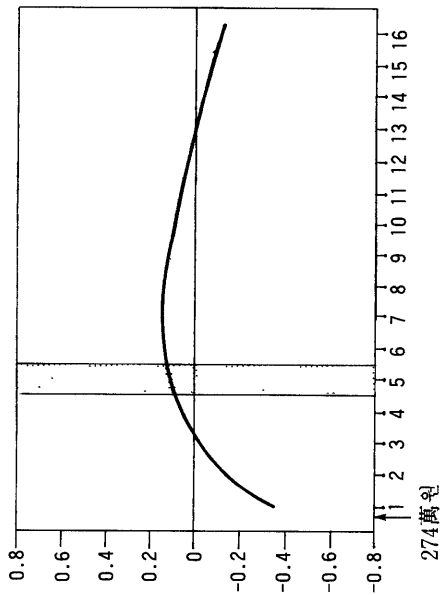
(19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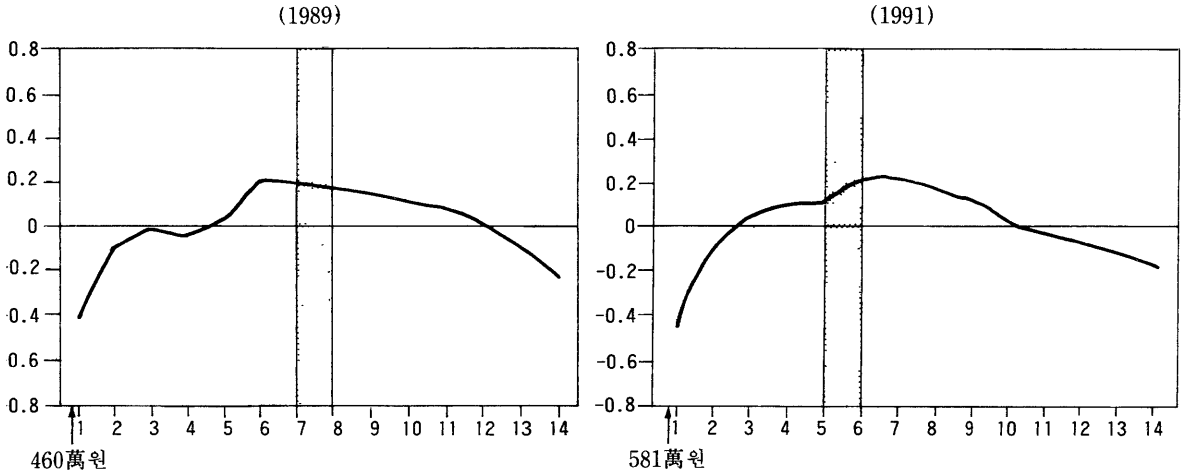


(1980)



(1983)





- 註: 1) 화살표가 나타내는 金額은 免稅點을 나타냄.
 2) 막대부분은 5人家族 家口의 所得(1人當 國民所得×5人)이 속하는 所得階級(1975~83년) 또는 所得番號(1970, 1972, 1989, 1991년)를 나타냄.
 3) 횡축은 소득번호 또는 소득계급을, 종축은 비율을 나타냄.

액의 상대적인 위치를 알 수 있다. [圖 2]에서 소득번호에 그려진 막대그림은 1人當GNP를 5倍함으로써 5人家族의 평균소득을 나타내 보려 하였다. 그리고 수평축 가장 왼편에 표시된 금액은 5人家族 면세금액을 나타냄으로써 이보다 낮은 금액의 소득자는 세부담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것을 표시하였다. 1人當GNP를 5倍함으로써 구한 5人家族基準 평균

소득수준에서의 괴리율 추이가 <表 3>에 나타나 있는데, 1970~80년까지는 -10~-16.5%로서 (-)였던 반면, 1982년 이후는 (+)이면서 점점 높아져 1991년에는 22%에 이르고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을 거듭함에 따라 5人家族을 基準으로 한 평균소득이 증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소득계급으로 이동하는 所得階級 移動現象 때문인

<表 3> 5人家族 基準 所得(1人當 國民所得×5)의 稅負擔

(단위: 萬원, %)

	1人當 國民所得×5	算出稅負擔과 推定值의 乖離率
1970	43.0	-12.0
1972	62.5	-13.0
1975	143.5	-16.5
1977	244.5	-15.0
1978	324.5	-11.5
1980	482.0	-10.0
1982	663.5	7.0
1983	773.5	7.5
1989	1,664.5	19.0
1991	1,836.5	22.0

〈表 4〉 勤勞所得類型別 人員 및 稅負擔現況(1989년 歸屬分)

(단위: 千名, 億원, %)

勤勞所得類型	勤勞所得人員①	課稅人員②	①/②	所得稅
總計	10,509	4,289	43.7	13,695(100.0)
月給與者	8,790	4,414	50.2	13,670(99.8)
日傭勤勞者	1,719	175	10.2	25(0.2)

資料: 財務部.

것으로 사료된다. 물론 국민소득 모두가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세법상 각종 수당 등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세부담이 과대 평가된 면이 없지 않으나 기간별 추이는 〈表 3〉에서 나타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추측된다.

3. 分析結果의 解釋

그러면 위의 두가지 分析結果 중 어느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일까? 個人的 效用은 課稅標準이 아니라 所得(엄격하게는 稅後 可處分所得)에 의존하므로, 名目稅率表를 효용할 수 추정에 이용한 결과보다 實效稅率表를 이용한 분석결과가 훨씬 신빙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 이유는 所得과 課稅標準의 구분이 잘되는 勤勞所得稅의 경우 實效稅率을 이용한 분석결과가 많은 부분 근로자가 勤勞所得稅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현실을 잘 반영하기 때문이다. 〈表 4〉에는 1989년 전체 근로자 중 50.2%만이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 실정이 나타나 있다. 그러므로 實效稅率表를 이용한 분석결과로부터 최저소득계층과 최고 소득계층은 전면적인 종합소득세제가 실시된 1975년부터 垂直的 衡平을 충족시키는 理論的 稅負擔보다 적게 부담하는 혜택을 받아 왔고, 중간소득계층은 오히려 그보다 더 많은 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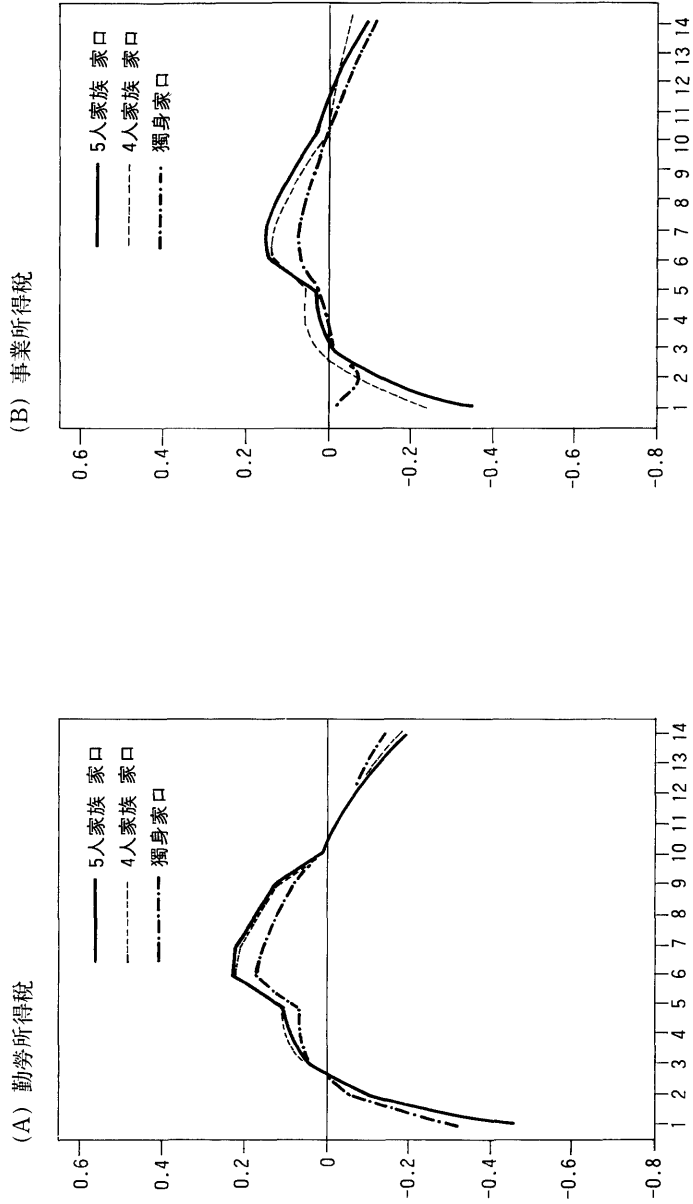
담을 하여 왔을 것이라는 추측을 할 수 있다. 결국 이것은 中間所得階層이 勤勞所得稅를 과도하게 부담하여 왔다는 것을 뜻한다.

4. 免稅點과 勤勞所得稅額 控除의 所得階級別 稅負擔效果

免稅點은 사업소득세와 근로소득세의 경우 必要經費의 취급이 상이하므로 각각 다르다. 勤勞所得의 경우 必要經費의 控除性格을 지닌 근로소득공제가 免稅點에 포함된 반면 사업소득의 경우 必要經費는 면세점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勤勞所得稅의 경우 독신자와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한 면세점이 1991년 299萬원과 513萬원이었다. 사업소득세의 경우 같은 해 獨身, 4人, 5인 가족基準으로 각각 48萬원, 198萬원, 246萬원이었다. 따라서 각각 다른 면세점을 名目稅率表上的의 과세표준에 합하여 實效稅率表를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같은 방법으로 소득계층별 稅負擔의 輕重을 살펴본다.

그 分析結果는 〈表 5〉와 [圖 3]에 나타나 있는데, 특이한 점은 면세점이 낮아짐에 따라 所得水準別 稅負擔의 理論的 稅負擔으로부터의 乖離程度가 줄어들었고, 결국에는 면세점이 0이 되면 [圖 1]에 나타난 1991년의 乖離率曲線과 같이 최저소득계층이 理論的 稅負擔

[圖 3] 免稅點의 所得階級別 稅負擔 效果(1991)



〈表 5〉 免稅點의 稅負擔 效果 比較(1991)

(단위 : 千원)

所得番號	所得	勤勞所得稅			事業所得稅		
		免稅點 581萬원 (5人家族 基準)	免稅點 513萬원 (4人家族 基準)	免稅點 299萬원 (獨身基準)	免稅點 246萬원 (5人家族 基準)	免稅點 198萬원 (4人家族 基準)	免稅點 48萬원 (獨身基準)
1(1)	7,810	-0.46	-0.44	-0.32	-0.35	-0.24	-0.02
2(2)	11,010	-0.10	-0.10	-0.07	-0.12	-0.06	-0.08
3(2)	12,210	0.04	0.04	0.04	-0.01	0.03	-0.01
4(2)	13,410	0.09	0.10	0.07	0.02	0.06	-0.00
5(2)	14,610	0.11	0.10	0.07	0.03	0.05	-0.02
6(3)	18,810	0.23	0.22	0.17	0.14	0.14	0.07
7(3)	21,810	0.22	0.21	0.16	0.15	0.13	0.08
8(3)	24,810	0.17	0.16	0.12	0.12	0.10	0.05
9(3)	26,810	0.13	0.12	0.09	0.09	0.07	0.03
10(4)	35,810	0.02	0.02	0.01	0.04	0.01	0.01
11(4)	40,810	-0.02	-0.02	-0.02	0.02	-0.02	0.00
12(4)	45,810	-0.07	-0.07	-0.06	-0.01	-0.04	-0.02
13(4)	50,810	-0.12	-0.11	-0.09	-0.05	-0.08	-0.04
14(5)	70,810	-0.19	-0.18	-0.14	-0.09	-0.12	-0.05

註 : () 안은 所得階級.

보다 더 많이 부담하게 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따라서 다른 사정이 동일하다면, 免稅點이 높으면 높을수록, 최저소득계층과 최고 소득계층은 상대적으로 稅負擔을 적게 부담하고 중간소득계층은 많이 부담하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勤勞所得의 경우 勤勞所得稅額控除制度가 1978년 도입된 후 1989년을 제외하고 계속 시행되어 오고 있는데, 약간의 변동을 거쳐 현재 年所得 3,600萬원 이하에 한하여 50萬원 한도 내에서 20%의 控除率이 적용되고 있다¹³⁾.

1991년 5人家族基準으로 근로소득세의 算出 稅負擔과 理論的 稅負擔과의 괴리를 비교한 결과, 稅額控除는 階層別 稅負擔이 이론적 세 부담에 좀더 근접하게 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圖 4]에 나타난 것처럼 年所得 780萬원에서 1,300萬원 범위의 1~4 所得番號와 年所得 3,600萬원에서 7,100萬원 범위의 10~14 所得番號에서는 勤勞所得稅額控除가 乖離率曲線을 상향으로 이동시켰고, 반대로 중간계층에서는 세 부담을 다소 완화시켜 괴리율곡선을 하향으로 이동시켰다. 특히 중간소득계층의 稅負擔輕減이 현저하게 나타나 年所得 1,900萬원에서 2,200萬원 범위의 세 번째(번호로는 6, 7) 소득계급의 稅負擔 輕減은 6~7%포인트에 달하는 것이었다(表 6). 따라

13) 1978~88년 기간은 10~30%, 1990년은 20~40%의 공제율이 적용되었음.

〈表 6〉 勤勞所得稅額控除의 所得階級別 稅負擔 效果(19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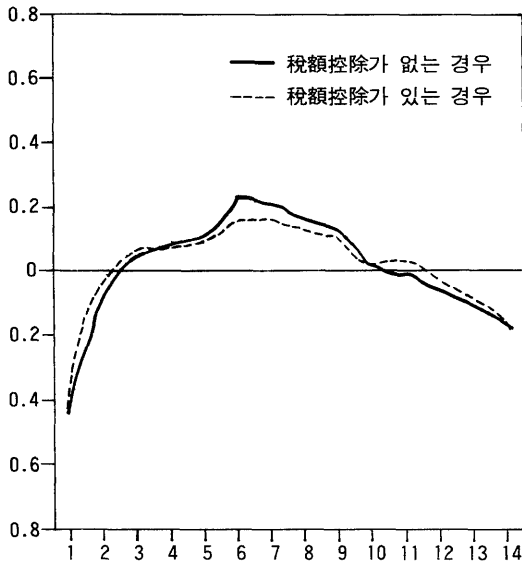
所得番號	所得	月所得	稅額控除가 없을 때	稅額控除가 있을 때
1(1)	7,810	650.8	-0.46	-0.41
2(2)	11,010	917.5	-0.10	-0.07
3(2)	12,210	1,017.5	0.04	0.05
4(2)	13,410	1,117.5	0.09	0.09
5(2)	14,610	1,217.5	0.11	0.09
6(3)	18,810	1,567.5	0.23	0.16
7(3)	21,810	1,817.5	0.22	0.16
8(3)	24,810	2,067.5	0.17	0.14
9(3)	26,810	2,234.2	0.13	0.11
10(4)	35,810	2,984.2	0.02	0.02
11(4)	40,810	3,400.8	-0.02	0.03
12(4)	45,810	3,817.5	-0.07	-0.03
13(4)	50,810	4,234.2	-0.12	-0.09
14(5)	70,810	5,900.8	-0.19	-0.19

註：() 안은 所得階級.

서 現行 勤勞所得稅額控除는 中間계층의 과중 稅負擔을 완화시켜주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IV. 結 論

[圖 4] 勤勞所得稅額控除의 所得階級別 稅負擔 效果



이상에서는 均等犧牲說이 시사하는 綜合所得에 대한 理論的 稅負擔을 다소 인위적인 여건 아래에서 계산해 보고, 이와 算出稅額의 所得階級別, 年度別 乖離推移를 實證分析하였다. 그 결과, 綜合所得稅率體系는 근로소득세 의 경우 中間계층이 이론적 세부담보다 많이 부담한 반면, 최저 및 최고계층은 적게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事業所得稅의 경우에도 1991년 한해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지만, 양상은 勤勞所得稅와 비슷하였고, 그 乖離의 정도가 근로소득세의 경우보다 약한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주어진 세율체계에서 免稅點이 낮아질수록 괴리의 정도는 줄어들었고, 궁극

〈表 7〉 年度別 稅負擔의 平均乖離率 推移

	所得階級數	平均乖離率 ¹⁾
1970	9	0.048
1972	9	0.042
1975	16	0.229
1977	16	0.206
1978	17	0.170
1980	17	0.166
1982	17	0.143
1983	16	0.104
1989	8	0.131
1991	5	0.141

註：1) 〈表 2〉의 各年度의 所得水準別 乖離率을 산술평균한 것임.

적으로 면세점이 없어도 최저소득계층은 오히려 稅負擔이 理論的 稅負擔보다 많아졌다.

따라서 1991년의 綜合所得稅率體系에 면세점이 없다고 가정하면, 그 稅率體系는 均等犧牲設이 示唆하는 바와 같이 垂直的 衡平을 잘 실현하는 것이므로 면세점을 없애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그러나 소득자의 여건(예를 들면 既未婚, 扶養家族數)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人的控除는 계속 유지하되 현재 소득에 비례해서 勤勞所得控除가 허용되는 것을¹⁴⁾ 定額으로 전환하는 것이 한 방법이다. 사실 勤勞所得控除는 事業所得稅 산출시 적용되는 必要經費 控除에 해당되는 것으로, 고소득자의 필요경비가 상대적으로 많을 것으로 보이지만 소득에 비례해서 공제해 주면 실제경비 이상을 공제해 줄

가능성이 높으므로 비례적인 공제보다 定額의 控除를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또 다른 방법은 人的控除制度는 유지하면서 勤勞所得控除制度를 없애고, 대신 勤勞所得稅額控除制度를 개선하는 것이다. 이미 현행 근로소득세액공제(5人家族基準年 2,000萬원 소득자까지는 세액의 20%를 定率控除, 그 이상 소득자에게는 50萬원으로 定額인 것과 같은 셈임)는 垂直的 衡平을 개선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定額, 定率 稅額控除制度를 적절히 혼합하면 된다 하겠다.

따라서 향후 稅制改編이 필요하게 되면 세율체계조정과 아울러 所得控除, 所得稅額控除制度를 적절히 이용하여 垂直的 衡平을 개선시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垂直的 衡平에 관한 한 所得階級の 縮小나 擴張이 반드시 수직적 형평을 저해하거나 제고시키는 것은 아니라 하겠다. 이는 〈表 7〉에 나타난 바와 같이 平均乖離率은 1975년 이후 소득계급이 16~17개에서 1991년에 5개로 축소되었으나 稅負擔의 平均乖離率은 계속 낮아져 왔다는 것으로부터 알 수 있다.

14) 현재 소득공제제도는 年 230萬원까지 전액 공제되고 그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는 230萬원을 초과하는 소득의 30%가 공제된다. 즉 $Y - [230 + 0.3(Y - 230)]$ 이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공식이 된다(Y 는 소득). 이를 풀어보면 $(Y - 0.3Y - 161)$ 로 표시되어 한계소득의 30%가 공제되는 셈임.

이와 아울러 稅負擔의 期間別 輕重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稅後 實質所得을 비교해야 하는 것이므로, 물가상승을 세율체계에 連動시키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한번 수직적 형평을 충족시키는 稅率體系가 결정되면, 기간이 지남에 따라 면세점, 각 소득계층의 상한, 하한소득 등에 物價上昇을 연동시켜 조

정하면 되는 것이다. 여기서 物價上昇率을 도매물가지수, 소비자물가지수, GNP디플레이터 등 여러 지수 중 어느 것을 이용하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겠으나 여러 지수들의 加重平均値도 이용가능하므로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이다.

▷ 參 考 文 獻 ◁

Feldstein, M., "On the Theory of Tax Reform," Paper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Seminar on Public Economics, 1975.

Friend, I. and M. Blume, "The Demand for Risky Assets," *American Economic Review*, 1975, pp.900~922.

Hochman, H. and J. Rodgers, "Pareto-Opti-

mal Redistributions," *American Economic Review*, 1969.

Musgrave, R., "The Theory of Public Finance," New York, McGraw-Hill Book Company, Inc., 1959.

Young, H.P., "Progressive Taxation and Equal Sacrifice," *American Economic Review*, 1990.

〈附表 1〉 統計資料
(1970년)

(단위: 千원)

所得 階級	法定稅率體系		所得 番號	課稅標準 (A)	所 得 (B)	稅 額 (C)	推定稅額 (D)	推定稅額 (D')	(C-D)/D	(C-D')/D'	名目稅率 (C/A)	實效稅率 (C/B)
	課稅標準	限界 稅率										
1	120미만	7	1	60	180	4.2	2.9	4.8	0.47	-0.12	0.070	0.023
2	120- 240	9	2	160	280	12.0	11.9	11.2	0.01	0.07	0.075	0.043
2			3	200	320	15.6	16.4	14.5	-0.05	0.08	0.078	0.049
3	240- 360	11	4	280	400	23.6	26.6	22.1	-0.11	0.07	0.084	0.059
3			5	320	440	28.0	32.2	26.5	-0.13	0.05	0.088	0.064
4	360- 720	14	6	480	600	49.2	57.6	47.7	-0.15	0.03	0.103	0.082
4			7	600	720	66.0	79.2	67.1	-0.17	-0.02	0.110	0.092
5	720- 960	20	8	800	920	98.8	119.3	105.8	-0.17	-0.07	0.124	0.107
5			9	880	1,000	114.8	136.6	123.3	-0.16	-0.07	0.130	0.114
6	960-1,200	27	10	1,040	1,160	152.4	173.0	161.8	-0.12	-0.06	0.147	0.131
6			11	1,120	1,240	174.0	192.1	182.7	-0.09	-0.05	0.155	0.140
7	1,200-1,800	34	12	1,400	1,520	263.6	263.0	263.8	0.00	-0.00	0.188	0.173
7			13	1,600	1,720	331.6	317.2	328.9	0.05	0.01	0.207	0.193
8	1,800-2,400	42	14	2,000	2,120	483.6	433.2	475.1	0.12	0.02	0.242	0.228
8			15	2,200	2,320	567.6	494.7	555.6	0.15	0.02	0.258	0.245
9	2,400초과	50	16	3,300	3,420	1,101.6	867.0	1,072.9	0.27	0.03	0.334	0.322

註: 所得 = 課稅標準 + 免稅點(12萬圓)

1人當GNP = 8.6萬圓

C: 算出稅額

D: 名目稅率表를 이용한 경우의 理論的 稅負擔의 推定稅額

D': 實效稅率表를 이용한 경우의 理論的 稅負擔의 推定稅額

(1972년)

(단위:千원)

所得 階級	法定稅率體系		所得 番號	課稅標準 (A)	所 得 (B)	稅 額 (C)	推定稅額 (D)	推定稅額 (D')	(C-D)/D	(C-D')/D'	名目稅率 (C/A)	實效稅率 (C/B)
	課稅標準	限界 稅率										
1	120만	7	1	60	240	4.2	2.9	5.6	0.43	-0.24	0.070	0.018
2	120-240	9	2	160	340	12.0	12.0	11.5	0.00	0.04	0.075	0.035
2			3	200	380	15.6	16.4	14.5	-0.05	0.07	0.078	0.041
3	240-480	12	4	320	500	28.8	32.0	25.6	-0.10	0.13	0.090	0.058
3			5	400	580	38.4	43.9	34.6	-0.13	0.11	0.096	0.066
4	480-720	15	6	560	740	60.0	70.5	56.8	-0.15	0.06	0.107	0.081
4			7	640	820	72.0	85.1	69.9	-0.15	0.03	0.113	0.088
5	720-960	19	8	800	980	99.2	116.4	99.9	-0.15	-0.01	0.124	0.101
5			9	880	1,060	114.4	133.0	116.8	-0.14	-0.02	0.130	0.108
6	960-1,200	25	10	1,040	1,220	149.6	167.9	154.2	-0.11	-0.03	0.144	0.123
6			11	1,120	1,300	169.6	186.2	174.6	-0.09	-0.03	0.151	0.130
7	1,200-1,800	32	12	1,400	1,580	253.6	254.0	254.9	-0.00	-0.01	0.181	0.161
7			13	1,600	1,780	317.6	305.6	320.3	0.04	-0.01	0.199	0.178
8	1,800-2,400	40	14	2,000	2,180	461.6	416.0	469.1	0.11	-0.02	0.231	0.212
8			15	2,200	2,380	541.6	474.3	551.9	0.14	-0.02	0.246	0.228
9	2,400초과	48	16	3,300	3,480	1,053.6	826.5	1,092.3	0.27	-0.04	0.319	0.303

註: 所得 = 課稅標準 + 免稅點(18萬圓)

1人當GNP = 12.5萬圓

(1975년)

(단위: 千원)

所得 階級	法定稅率體系		課稅標準 (A)	所得 所 (B)	稅 額 (C)	推定稅額 (D)	推定稅額 (D')	(C-D)/D	(C-D')/D'	名目稅率 (C/A)	實效稅率 (C/B)
	課稅標準	限界 稅率									
1	240미만	8	120	900	9.6	6.4	30.6	0.50	-0.69	0.080	0.011
2	240- 480	10	360	1,140	31.2	31.9	48.8	-0.02	-0.36	0.087	0.027
3	480- 720	12	600	1,380	57.6	67.1	71.1	-0.14	-0.19	0.096	0.042
4	720- 960	15	840	1,620	90.0	109.0	97.3	-0.17	0.07	0.107	0.056
5	960- 1,200	18	1,080	1,860	129.6	156.4	127.3	-0.17	0.02	0.120	0.070
6	1,200- 1,500	21	1,350	2,130	182.7	215.3	165.6	-0.15	0.10	0.135	0.086
7	1,500- 1,800	25	1,650	2,430	251.7	286.7	213.6	-0.12	0.18	0.152	0.104
8	1,800- 2,400	30	2,100	2,880	379.2	403.7	295.8	-0.06	0.28	0.181	0.132
9	2,400- 3,000	35	2,700	3,480	574.2	575.7	423.9	-0.03	0.35	0.213	0.165
10	3,000- 4,800	40	3,900	4,680	1,039.2	963.9	738.2	0.08	0.41	0.266	0.222
11	4,800- 7,200	45	6,000	6,780	1,939.2	1,751.1	1,452.6	0.11	0.33	0.323	0.286
12	7,200-12,000	50	9,600	10,380	3,679.2	3,326.9	3,068.7	0.11	0.20	0.383	0.354
13	12,000-24,000	55	18,000	18,780	8,179.2	7,709.7	8,137.7	0.06	0.01	0.454	0.436
14	24,000-36,000	60	30,000	30,780	15,079.2	15,004.0	17,158.4	0.01	-0.12	0.503	0.490
15	36,000-48,000	65	42,000	42,780	22,579.2	23,051.1	27,257.2	-0.02	-0.17	0.538	0.528
16	48,000초과	70	57,000	57,780	32,779.2	33,811.4	40,672.0	-0.03	-0.19	0.575	0.567

註: 所得 = 課稅標準 + 免稅點 (78萬원)

1人當GNP = 28.7萬원

(1977년)

(단위:千원)

所得 階級	法定稅率體系		課稅標準 (A)	所 得 (B)	稅 額 (C)	推定稅額 (D)	推定稅額 (D')	(C-D)/D	(C-D)/D'	名目稅率 (C/A)	實效稅率 (C/B)
	課稅標準	限界 稅率									
1	420미만	8	210	1,650	16.8	10.6	50.3	0.58	-0.67	0.080	0.010
2	420- 840	10	630	2,070	54.6	55.0	81.3	-0.01	-0.33	0.087	0.026
3	840- 1,260	12	1,050	2,490	100.8	117.3	120.1	-0.14	-0.16	0.096	0.040
4	1,260- 1,680	15	1,470	2,910	157.5	192.6	166.6	-0.18	-0.05	0.107	0.054
5	1,680- 2,100	18	1,890	3,330	226.8	278.4	220.8	-0.19	0.03	0.129	0.068
6	2,100- 2,520	21	2,310	3,750	308.7	373.1	282.6	-0.17	0.09	0.134	0.082
7	2,520- 3,120	25	2,820	4,260	427.8	498.6	367.6	-0.14	0.16	0.152	0.100
8	3,120- 3,840	30	3,480	4,920	610.8	675.9	493.9	-0.10	0.24	0.176	0.124
9	3,840- 4,800	35	4,320	5,760	886.8	922.6	678.0	-0.04	0.30	0.205	0.154
10	4,800- 7,200	40	6,000	7,440	1,534.8	1,474.6	1,133.7	0.04	0.35	0.256	0.206
11	7,200- 9,600	45	8,400	9,840	2,554.8	2,372.1	1,954.2	0.08	0.31	0.304	0.260
12	9,600-14,400	50	12,000	13,440	4,294.8	3,901.8	3,512.5	0.10	0.22	0.358	0.320
13	14,400-28,800	55	21,600	23,040	9,454.8	8,720.0	9,084.0	0.08	0.04	0.438	0.410
14	28,800-43,200	60	36,000	37,440	17,734.8	17,222.6	19,761.7	0.03	-0.10	0.493	0.474
15	43,200-57,600	65	50,400	51,840	26,734.8	26,690.3	31,886.7	0.00	-0.16	0.530	0.516
16	57,600초과	70	68,400	69,840	38,974.8	39,427.7	48,073.5	-0.01	-0.19	0.570	0.558

註: 所得=課稅標準+免稅點(144萬圓)

1人當GNP=48.9萬圓

(1978년)

(단위:千원)

所得 階級	法定稅率體系		課稅標準 (A)	所 得 (B)	稅 額 (C)	推定稅額 (D)	推定稅額 (D')	(C-D)/D	(C-D')/D'	名目稅率 (C/A)	實效稅率 (C/B)
	課稅標準	限界 稅率									
1		600미만	8	1,900	24	14.9	60.2	0.62	-0.60	0.080	0.013
2		600- 1,200	10	2,500	78	77.1	105.1	0.01	-0.26	0.087	0.031
3		1,200- 1,800	12	3,100	144	164.6	162.3	-0.13	-0.11	0.096	0.046
4		1,800- 2,400	15	3,700	225	270.5	231.6	-0.17	-0.03	0.107	0.061
5		2,400- 3,000	18	4,300	324	391.3	312.7	-0.17	0.04	0.120	0.075
6		3,000- 3,600	21	4,900	441	524.8	405.3	-0.16	0.09	0.134	0.090
7		3,600- 4,200	24	5,500	576	669.4	509.2	-0.14	0.13	0.148	0.105
8		4,200- 4,800	25	6,100	723	824.0	624.0	-0.12	0.16	0.161	0.119
9		4,800- 6,000	30	7,000	978	1,072.6	816.2	-0.09	0.20	0.181	0.140
10		6,000- 8,400	35	8,800	1,578	1,621.9	1,268.8	-0.03	0.24	0.219	0.179
11		8,400-10,800	40	11,200	2,478	2,443.8	2,003.4	0.01	0.24	0.258	0.221
12		10,800-14,400	45	14,200	3,768	3,587.8	3,109.7	0.05	0.21	0.299	0.265
13		14,400-21,600	50	19,600	6,378	5,902.7	5,547.5	0.08	0.15	0.354	0.325
14		21,600-36,000	55	30,400	12,138	11,248.6	11,726.3	0.08	0.04	0.421	0.399
15		36,000-54,000	60	46,600	21,498	20,477.3	23,114.6	0.05	-0.07	0.478	0.461
16		54,000-84,000	65	70,600	36,648	35,867.1	42,580.4	0.02	-0.14	0.531	0.519
17		84,000초과	70	108,600	63,198	76,441.5	63,198.0	0.01	-0.17	0.591	0.582

註: 所得 = 課稅標準 + 免稅點(160萬원)

1人當GNP = 64.9萬원

(1980년)

(단위:千元)

所得 階級	法定稅率體系		課稅標準 (A)	所 得 (B)	稅 額 (C)	推定稅額 (D)	推定稅額 (D')	(C-D)/D	(C-D')/D'	名目稅率 (C/A)	實效稅率 (C/B)
	課稅標準	限界 稅率									
1	1,200미만	6	600	2,980	36	23.5	70.2	0.54	-0.49	0.060	0.012
2	1,200-1,800	8	1,500	3,880	96	101.4	127.1	-0.05	-0.24	0.064	0.025
3	1,800-2,400	10	2,100	4,480	150	172.9	175.2	-0.13	-0.14	0.071	0.033
4	2,400-3,000	12	2,700	5,080	216	257.1	231.7	-0.16	-0.07	0.080	0.043
5	3,000-3,600	15	3,300	5,680	297	352.5	296.6	-0.16	0.00	0.090	0.052
6	3,600-4,500	18	4,050	6,430	423	485.8	389.8	-0.13	0.09	0.104	0.066
7	4,500-5,400	21	4,950	7,330	598.5	664.2	519.3	-0.10	0.15	0.121	0.082
8	5,400-6,900	24	6,150	8,530	873	930.0	721.9	-0.06	0.21	0.142	0.102
9	6,900-8,400	28	7,650	10,030	1,263	1,301.9	1,022.6	-0.03	0.24	0.165	0.126
10	8,400-10,800	32	9,600	11,980	1,857	1,842.8	1,490.7	0.01	0.25	0.193	0.155
11	10,800-13,200	36	12,000	14,380	2,673	2,585.8	2,181.7	0.03	0.23	0.223	0.186
12	13,200-18,000	40	15,600	17,980	4,065	3,836.5	3,440.3	0.06	0.18	0.261	0.226
13	18,000-24,000	44	21,000	23,380	6,345	5,965.7	5,773.9	0.06	0.10	0.302	0.271
14	24,000-33,000	48	28,500	30,880	9,825	9,325.4	9,754.8	0.05	0.01	0.345	0.318
15	33,000-45,000	52	39,000	41,380	15,105	14,637.3	16,432.2	0.03	-0.08	0.387	0.365
16	45,000-60,000	56	52,500	54,880	22,425	22,257.1	26,338.9	0.01	-0.15	0.427	0.409
17	60,000초과	62	71,250	73,630	33,600	33,930.2	41,657.7	-0.01	-0.19	0.472	0.456

註: 所得 = 課稅標準 + 免稅點(238萬圓)

1人당GNP=96.4萬圓

(1982년)

(단위: 천원)

所得 階級	法定稅率體系		課稅標準 (A)	所 得 (B)	稅 額 (C)	推定稅額 (D)	推定稅額 (D')	(C-D)/D	(C-D)/D'	名目稅率 (C/A)	實效稅率 (C/B)
	課稅標準	限界 稅率									
1	1,200	만	600	3,280	36	22.1	65.3	0.62	-0.45	0.060	0.011
2	1,200-1,800		1,500	4,180	93	92.6	112.8	0.00	-0.18	0.062	0.022
3	1,800-2,400		2,100	4,780	138	156.1	152.4	-0.12	-0.10	0.066	0.029
4	2,400-3,000		2,700	5,380	192	230.3	198.7	-0.17	-0.03	0.071	0.036
5	3,000-3,900		3,450	6,130	276	336.0	265.8	-0.18	0.04	0.080	0.045
6	3,900-4,800		4,350	7,030	397.5	480.0	360.2	-0.17	0.10	0.091	0.057
7	4,800-6,000		5,400	8,080	573	667.4	489.7	-0.14	0.17	0.106	0.071
8	6,000-8,400		7,200	9,880	945	1,033.7	760.5	-0.09	0.24	0.131	0.096
9	8,400-11,400		9,900	12,580	1,599	1,672.9	1,281.0	-0.04	0.25	0.162	0.127
10	11,400-15,000		13,200	15,880	2,529	2,572.2	2,098.4	-0.02	0.21	0.192	0.159
11	15,000-19,000		17,000	19,680	3,749	3,744.9	3,273.2	0.00	0.15	0.221	0.190
12	19,000-24,000		21,500	24,180	5,379	5,291.5	4,962.0	0.02	0.08	0.250	0.222
13	24,000-30,000		27,000	29,680	7,589	7,377.3	7,416.9	0.03	0.02	0.281	0.256
14	30,000-38,000		34,000	36,680	10,689	10,292.8	11,075.6	0.04	-0.03	0.314	0.291
15	38,000-48,000		43,000	45,680	15,029	14,397.0	16,500.5	0.04	-0.09	0.350	0.329
16	48,000-60,000		54,000	56,680	20,829	19,859.9	23,987.7	0.05	-0.13	0.386	0.367
17	60,000	초과	69,000	71,680	29,529	27,949.0	35,305.5	0.06	-0.16	0.428	0.412

註: 所得 = 課稅標準 + 免稅點(238萬圓)

1人當GNP = 96.4萬圓

(1983년)

(단위 : 千원)

所得 階級	法定稅率體系		課稅標準 (A)	所 得 (B)	稅 額 (C)	推定稅額 (D)	推定稅額 (D')	(C-D)/D	(C-D')/D'	名目稅率 (C/A)	實效稅率 (C/B)
	課稅標準	限界 稅率									
1	1,800미만	6	900	3,640	54	36.5	82.3	0.48	-0.34	0.060	0.015
2	1,800- 2,500	8	2,150	4,890	136	142.1	156.3	-0.04	-0.13	0.063	0.028
3	2,500- 3,500	10	3,000	5,740	214	238.3	221.1	-0.10	-0.03	0.071	0.037
4	3,500- 4,800	12	4,150	6,890	342	393.5	327.6	-0.13	0.04	0.082	0.050
5	4,800- 6,300	15	5,550	8,290	532.5	615.4	486.8	-0.13	0.09	0.096	0.064
6	6,300- 8,000	18	7,150	9,890	798	906.7	708.1	-0.12	0.13	0.111	0.081
7	8,000-10,000	21	9,000	11,740	1,161	1,287.1	1,016.0	-0.10	0.14	0.129	0.099
8	10,000-12,500	24	11,250	13,990	1,671	1,804.5	1,464.2	0.07	0.14	0.149	0.119
9	12,500-15,500	27	14,000	16,740	2,376	2,508.0	2,118.1	-0.05	0.12	0.170	0.142
10	15,500-19,000	31	17,250	19,990	3,323.5	3,427.4	3,034.7	0.03	0.10	0.193	0.166
11	19,000-23,000	35	21,000	23,740	4,566	4,591.3	4,273.9	-0.01	0.07	0.217	0.192
12	23,000-29,000	39	26,000	28,740	6,436	6,292.1	6,204.2	0.02	0.04	0.248	0.224
13	29,000-37,000	43	33,000	35,740	9,326	8,917.4	9,381.1	0.05	-0.01	0.283	0.261
14	37,000-47,000	47	42,000	44,740	13,396	12,643.3	14,157.1	0.06	-0.05	0.319	0.299
15	47,000-60,000	51	53,500	56,240	19,061	17,877.2	21,173.6	0.07	-0.10	0.356	0.339
16	60,000초과	55	69,750	72,490	27,738.5	26,003.8	32,411.2	0.07	-0.14	0.398	0.383

註 : 所得 = 課稅標準 + 免稅點 (274萬원)

1人當GNP = 154.7萬원

(1989년)

(단위:千원)

所得 階級	法定稅率體系		所得 番號	課稅標準 (A)	所 得 (B)	稅 額 (C)	推定稅額 (D)	推定稅額 (D')	(C-D)/D	(C-D)/D'	名目稅率 (C/A)	實效稅率 (C/B)
	課稅標準	限界 稅率										
1	2,500미만	5	1	1,250	5,850	62.5	45.3	108.5	0.38	-0.42	0.050	0.011
2	2,500-5,000	10	2	3,300	7,900	205	217.5	228.5	-0.06	-0.10	0.062	0.026
2			3	4,150	8,750	290	314.2	294.0	-0.08	-0.01	0.070	0.033
3	5,000-8,000	15	4	6,000	10,600	448.5	566.0	470.5	-0.21	-0.05	0.075	0.042
3			5	7,000	11,600	598.5	723.1	586.0	-0.17	0.02	0.086	0.056
4	8,000-12,000	20	6	9,300	13,900	1,085	1,133.5	907.0	-0.04	0.20	0.117	0.078
4			7	10,600	15,200	1,345	1,392.7	1,123.5	-0.03	0.20	0.127	0.088
5	12,000-17,000	25	8	13,700	18,300	2,050	2,081.3	1,742.8	-0.02	0.18	0.150	0.112
5			9	15,400	20,000	2,475	2,497.2	2,144.4	-0.01	0.15	0.161	0.124
6	17,000-23,000	30	10	19,000	23,600	3,475	3,457.9	3,137.7	0.01	0.11	0.183	0.147
6			11	21,000	25,600	4,075	4,034.6	3,771.7	0.01	0.08	0.194	0.159
7	23,000-50,000	40	12	32,000	36,600	8,275	7,670.6	8,229.6	0.08	0.01	0.259	0.226
7			13	41,000	45,600	11,875	11,132.3	12,942.3	0.07	-0.08	0.290	0.260
8	50,000초과	50	14	70,250	74,850	25,600	24,592.3	33,849.7	0.04	-0.22	0.364	0.342

註: 所得=課稅標準+免稅點(460萬원)

1人當GNP=332.9萬원

(1991년)

(단위: 千원)

所得 階級	法定稅率體系		所得 番號	課稅標準 (A)	所 得 (B)	稅 額 (C)	推定稅額 (D)	推定稅額 (D')	(C-D)/D	(C-D')/D'	名目稅率 (C/A)	實效稅率 (C/B)
	課稅標準	限界 稅率										
1	4,000미만	5	1	2,000	7,810	100	91.0	186.6	0.10	-0.46	0.050	0.013
2	4,000-10,000	16	2	5,200	11,010	392	435.3	437.2	-0.10	-0.10	0.075	0.036
2			3	6,400	12,210	584	609.7	563.7	-0.04	0.04	0.091	0.048
2			4	7,600	13,410	776	804.9	708.8	-0.04	0.09	0.102	0.058
2			5	8,800	14,610	968	1,019.3	873.0	-0.05	0.11	0.110	0.066
3	10,000-25,000	27	6	13,000	18,810	1,970	1,902.3	1,601.5	0.04	0.23	0.152	0.105
3			7	16,000	21,810	2,780	2,643.4	2,270.3	0.05	0.22	0.174	0.127
3			8	19,000	24,810	3,590	3,464.4	3,062.5	0.04	0.17	0.189	0.145
3			9	21,000	26,810	4,130	4,052.2	3,657.9	0.02	0.13	0.197	0.154
4	25,000-50,000	38	10	30,000	35,810	7,110	7,044.7	6,971.8	0.01	0.02	0.237	0.199
4			11	35,000	40,810	9,010	8,921.0	9,227.6	0.01	-0.02	0.257	0.221
4			12	40,000	45,810	10,910	10,928.9	11,748.0	-0.00	-0.07	0.273	0.238
4			13	45,000	50,810	12,810	13,055.6	14,507.7	-0.02	-0.12	0.285	0.252
5	50,000초과	50	14	65,000	70,810	22,210	22,560.3	27,482.2	-0.02	-0.19	0.342	0.314

註: 所得 = 課稅標準 + 免稅點 (581萬圓)

1人當GNP = 367.3萬圓

〈附表 2〉 各國의 效用函數파라미터 推定結果

연도	국가 이용자료	美 國		獨 逸	英 國	이탈리아	日 本
		名 目 稅率表	實 效 稅率表	名目稅率表	名目稅率表	名目稅率表	名目稅率表
1957		1.63	1.61	-	-	-	-
1967		1.53	1.52	-	-	-	-
1977		1.79	1.72	-	-	-	-
1987		1.37	-	1.63 ¹⁾	1.16	1.40	1.59

註：1) 1984년입.
資料：Young(1990).

hold true if there is no externality and if the industry is not a natural monopoly.

We also extend this result by examining a model in which the government is an active participant in the game with a well defined preference. Analysis of this model shows that over-investment arises if the government cannot credibly precommit itself to non-intervention when *ex post* idle capacity occurs, due to socio-political reasons. Firms invest in capacities that exceed socially optimal levels in this case because they correctly expect that the government will find it optimal for itself to intervene once over-investment and ensuing financial problems for the firms occur. Such planned over-investment and ensuing government intervention are the generic problems under the current system. These problems are expected to be repeated in many industries in years to come, causing a significant loss of welfare in the long run.

As a remedy to this problem, we recommend a non-intervention policy by the government which creates and utilizes uncertainty. Based upon an argument which is essentially the same as that of Kreps and Wilson in the context of a chain-store game, we show that maintaining a consistent non-intervention policy will deter a planned over-investment by firms in the long run. We believe that the results obtained in this paper has a direct bearing on the public policies relating to many industries including the petrochemical industry that is currently in the center of heated debates.

The Rate Schedule of Income Tax and Vertical Equity

Roh Kee-sung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determine whether the rate schedule of the Korean income tax system embodies the theoretically desirable distribution of the tax burden by income classes. The paper follows the approach of Young (1990) who has estimated the utility function and calculated the magnitude of sacrifice, i.e., the tax burden.

The main point of the study is to estimate the utility function. The estimation results may differ if different data sets are used. Therefore, this paper employs the effective as well as the nominal tax rate schedule.

The findings derived in this paper are 1) that the effective rate schedule is more appropriate in estimating the utility function; 2) that the middle class has born the relatively heavier burden over time; 3) that the current income tax credit scheme curtails the tax burden on the middle class while intensifying the tax burden of the lower and upper income classes; 4) that reducing the amount of deduction moves the distribution of tax burdens by income classes closer to the theoretically desirable model; 5) that the rate schedule of the Korean income tax system, particularly in 1991, did not conform to the desired model as did the tax systems of developed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Italy, Japan, and Germany.